

마이크로전공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마이크로전공란 세분화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·복합 교육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교육과정을 말하며, 학문과 융복합 사고능력 함양 및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실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) ① 마이크로전공을 교양 교육과정, 전공 교육과정 및 융·복합 교육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(부)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이크로전공 개설 신청서
2. 학과 교수 회의 회의록 또는 관련 위원회 회의록

제4조(운영) ①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속기관 또는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마이크로전공에 대한 각 과정별 교과목 편성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,
- ③ 마이크로전공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④ 마이크로전공 운영은 3년 주기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교과과정 구성) 마이크로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
2. 교양 교육과정 : 교양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문과정
3. 전공 교육과정 : 단일 학과(부)의 전공과목만으로 구성된 전문과정
4. 융·복합 교육과정 : 둘 이상의 학과(부)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문과정 또는 교양 교과목과 학과(부)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전문과정

제6조(편성원칙) ① 마이크로전공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편성한다.

1. 성경적 세계관 기반 교육
2. 체계적·유기적 운영
3. 디지털 리터러시·미래소양 함양
4. 전공역량 및 직무역량 증진
5. 학습 동기 유발 교육
6.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유도
7. 진로대비 현장 실무역량 강화
8. 학습자 친화형 유도
9. 지역사회 및 교회에 봉사학습 유도
10. 기타 변화하는 시대 및 산업체에 부합된 교육과정 반영

제7조(신청 및 자격) 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 마이크로전공 이수 신청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소속학과(부)장 및 마이크로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(부)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- ②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한 자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·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, 부·복수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③ 마이크로전공이 설치된 학과 학과(전공)를 주전공 또는 부·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자는 해당 마이크로전공을 신청 또는 이수할 수 없다.
- ④ 교양교육과정과 융복합교육과정에서 개설된 마이크로전공의 경우엔 3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학생이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8조(과정이수) ① 마이크로전공은 최대 2개의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다.

- ②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으로 포함한다.
- ④ 이수하고 있던 마이크로전공 과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과정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졸업을 위하여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.
- ⑤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⑥ 두 과정 이상 마이크로전공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상호 중복인정하지 않으며 학생은 이를 고려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- ⑦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학위증서 및 졸업증명서에 표시한다.
- ⑧ 같은 학과에서 개설된 마이크로전공을 2개를 이수한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⑨ 마이크로전공 신청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마이크로전공에 포함된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.
- ⑩ 마이크로전공은 졸업요건으로 두지 않으며, 자율적 선택 과정으로 운영한다.

제9조(폐강기준)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본교 학칙시행 시행내규 제18조에 따른다.

제10조(포기)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크로전공 포기 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소속학과(부)장 및 이수 중인 마이크로전공 학과(부)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11조(이수학점 및 이수증 수여) ① 마이크로전공과정의 최저이수학점은 12학점이상에서 각 과정별로 지정하며, 마이크로전공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에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의 교과목 중에 소속학과(부)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타 학과(부) 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마이크로전공 이수증을 수여하고 이수 결과를 학적부에 등재한다.

제10조(실험실습비)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마이크로전공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개설된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칙) 이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은 총장의 승인출 통해 정할 수 있다.

부칙

(시행일) 1.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1호서식)

마이크로전공 과정 개설 신청서

학과(부)명			전공명					
마이크로 디그리명	국문							
	영문							
1. 과정 소개 및 운영 목적								
2. 교과과정표(교과목, 학기별 개설계획, 담당교원)								
연번	교과목명	학점	시간	종류	개설시기	개설학과	담당 교원	
				이론	1,2,계절학기		성명	구분
				실습				
3. 관련사업명 : (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)								
위와 같이 마이크로전공 과정 개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
첨부 : 1. 마이크로 전공 운영계획서								
2. 학과 교수회의 회의록(또는 관련 회의록)								
학과장(부서장)							(인)	
책임교수							(인)	

마이크로전공 운영계획서

1. 마이크로전공 설치 목적 필요성

2. 마이크로전공 과정 구성 내용 및 기대효과

3. 교육과정 설계

1) 인재상

2) 교육목표

3) 마이크로전공 과정명

4) 교과목명

5) 교과학습목표

6) 교육내용

(별지 제2호 서식)

마이크로전공 이수 신청서

승 인	소속 학과(부)장	마이크로 전공 학과(부)장

학년 : 학번 : 성명 : 연락처(자택) : 휴대폰 :	
마이크로전공	마이크로전공 명 : [대학 학과(부) 전공 (주, 야)]
소속학과 및 전공	학과(부) 전공
상기 본인은 마이크로전공운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전공이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교무처장 귀하	

(별지 제3호 서식)

마이크로전공 포기 신청서

		확 인	소속 학과(부)장		마이크로 전공 학과(부)장	
소속학과(부)		이크로디그리 과정		마이크로전공 명 : 학과(부) :		
성명		학년		학번		
연락처 (자택)		휴대폰				
상기 본인은 마이크로전공운영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마이크로전공과정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인) 교무처장 귀하						

제 호

마이크로전공 이수증

성 명 :
생년월일 : 년 월 일생
학 과 :

위 사람은 아래에 표시된 마이크로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역량을
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.

과정명 : ○○○○○ 마이크로전공
이수학점수 : ○○ 학점

년 월 일

대신대학교 총 장 (직인)